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건의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171
-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 외 25명
- 발 의 일 : 2017년 10월 24일
- 회 부 일 : 2017년 10월 30일

2. 제안이유

-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임기를 정하여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국가직 임기제공무원과 지방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방법과 근무기간 연장이 상이함.
-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국가직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에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기시험을 면제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으나, 지방직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에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없음.

- 또한, 전문직 및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국가직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의제6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지방직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근무실적이 탁월하더라도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근무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의 전문적 업무 연속성 단절에 따른 불안정한 행정 집행 초래는 물론 국가직 임기제공무원과 지방직 임기제공무원간 고용 차별이 존재하여 평등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할 것임.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상 지방직 임기제 공무원은 국가직 임기제 공무원과 달리 임용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고, 근무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국가직 임기제공무원은 성과에 따라 근무기간 총 5년을 초과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지방직 임기제공무원은 총 5년의 근무기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임기제 고용에 차별을 겪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채용된‘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과 임용규정이 국가직과 지방직 간에 상이한 바, 지방의 전문적 업무 연속성을 통해 행정의 안정적 집행을 강화하고 국가직과 지방직간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직 임기제 공무원과 같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나. 기타사항 : 없 음.

5. 이 송 처

가. 국 회 : 국회의장, 행정안전위원장

나. 정 부 :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6. 검토의견

-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연속성으로 인한 행정의 안정적 집행과 지방직 임기제공무원과 국가직 임기제공무원의 고용 차별 해소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임.
-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과 시험기간 등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국가직임기제공무원과 지방직임기제공무원 비교〉

구분	국가직 임기제공무원	지방직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공무원임용령 총 10년(5+5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총 5년(2+3)
채용시험등의 방법	공무원임용령 (필기시험+면접·실기) ※ 필기시험 면제 가능	지방공무원임용령 (필기시험+면접·실기) ※ 필기시험 면제 불가능

- 국가직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과 근무기간을 규정한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국가직 임기제공무원은 임용시험과정에서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하며(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 근무기간을 최장 10년(5+5)으로 연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제5호2)).

1) [공무원임용령] 제2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 중인 사람을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제8항 단서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은 제외한다)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 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정의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목적, 종사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직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최대 5년으로 규정하고, 필기시험을 임용시험방법으로 하고 있는 등 근무기간과 임용시험방법에서 국가직 임기제공무원과 달리 규정하고 있음³⁾).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비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비고
제26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동일

- 2)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제16조제7항에 따라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에 대한 통보나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의 4제1항 후단을 준용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이나 별정직 1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을 퇴직과 동시에 1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하다가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하던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제21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 이러한 차별규정으로 지방직 임기제공무원은 제한된 근무기간으로 인한 고용불안 및 업무수행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형식적인 채용절차로 행정력의 낭비우려 증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등 우수 인재 확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의 차별 사례 및 시정조치 내역〉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진정 결과 2건
 - 대우공무원 선발시 지방공무원에 대한 차별 개정 권고(2014.9.19.)
 - ↳ 특정직 공무원 재직경력 인정 차별 : 국가직 모두 인정, 지방직 3년이상 근무기간만 인정한 사례
 - 지방자치단체 방호직렬 공무원 채용시 차별 해소 권고(2016,10,31)

- 따라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상 차별요소가 포함된 임용시험 방법과 근무기간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직 임기제공무원과 지방직 임기제공무원간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전문성 및 업무의 연속성 강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